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교장 공모 임용제 도입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7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교장 공모 임용제 도입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6.
3. 회 부 일 : 2026.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율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율학교 외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또한 학교의 장의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장 임용 시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또한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임용에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Ⅲ. 검토의견

1.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교장 공모 임용제 도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도 자율학교 등과 같이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임용에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생략)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	② ----- -----제60조의2, 제60조의3 및 제61조----- ----- ----- ----- -----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함.¹⁾
- 이러한 교장의 임용은 일반 임용과 공모 임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이고,

공모 임용은 같은 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을 임용하는 것으로 초빙형, 개방형, 내부형 등으로 구분됨.
- 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제1항에 따라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²⁾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자율학교 등³⁾에서는 교장자격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3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증이 없는 사람도 개방형, 내부형 공모를 통해 임용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 개방형 공모 임용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당 학교와 관련된 전문 경력 소지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음.
- 또한 내부형 공모 임용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농어촌학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근무자가 역량을 발휘하여 교장으로

(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로 임용될 수 있음.

[교장 임용 유형]

구분		내용
일반		• (절차)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자격) 교장자격증 소지자 • (대상학교) 일반학교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제1항
공모	공통	• (절차)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
	초빙형	• (자격) 교장자격증 소지자 • (대상학교) 일반학교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제1항
	개방형	• (자격) - 교장자격증 소지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경우)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상학교) -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 등 -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부형	• (자격) - 교장자격증 소지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 근무한 경력(교육전문직원 근무 경력 포함)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50% 범위 내) • (대상학교) 일반학교 -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농어촌학교 등 -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2항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장 공모제 유형별 임용 현황]

(단위: 명)

유형	초빙형	개방형			내부형			합계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소계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소계	
인원 수	237	43	50	93	339	141	480	810

주: 2025.9.1. 기준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이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가진 학교에 대해 개방형, 내부형 교장 공모 임용을 도입한 것은, 일반 학교와 다른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개방형 및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 개정안에 규정된 개방형 및 내부형 공모 교장 임용 적용대상 중,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외국인의 자녀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고,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 근거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두 학교 모두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교장이 되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 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고 있음.⁴⁾

□ 이 중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교장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각 학교별로 교장의 자격 등을 정하여 임용하고 있고,⁵⁾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교장의 자격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개방형 및 내부형 공모 교장 임용 근거가 마련될 경우, 공모를 통해 관련 전문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7. 교장·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기타 내용 생략)

□ 다만,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및 제60조의3(대안학교)에 개방형 및 내부형 교장 공모 임용을 도입하도록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립, 공립,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반면,⁶⁾ 「교육공무원법」의 학교는 국립, 공립 학교만 포함하고 있어,⁷⁾ 「초·중등교육법」의 사립학교에 「교육공무원법」의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38개교가 모두 사립학교인 외국인학교⁸⁾와 28개 사립 대안학교에는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한편, 관련 하위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6)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8)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자율학교 등 중에서, 국·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등에 따라 개방형 및 내부형 공모 교장 임용을 실시하고,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적용 규정을 준용하여 공모 교장 임용을 실시하고 있음.⁹⁾

[설립주체별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현황]

(단위: 명)

유형	공립	사립	합계
외국인학교	-	38	38
대안학교	24	28	52

주: 외국인학교는 2025.9. 기준, 대안학교는 2025.4. 기준
자료: 교육부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외국인학교(법 제60조의2)와 다수의 대안학교(법 제60조의3)는 사립학교이며 교장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에 있으므로, 사립학교 공모교장의 자격기준과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할 수 없음. - 다만, 공립 대안학교에서 내부형·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므로, 적용범위에서 제60조의2를 삭제하고 제60조의3을 공립학교로 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 경기도교육청: 이견없음 -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대안 교육과정 및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해당 분야에 깊은 이해와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학교경영이 필수적임.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전문가가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 신중검토 -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위해 교장 자격기준을 달리 적용했는데, 공립학교 기준으로 교장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